

2024 「한국미술 비평지원」 사업 참여단체 2차 공모 PT심의 결과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 전문지와 비평가 연계 지원을 통한 비평문화 확산 및 비평가 양성을 위해 2024년 「한국미술 비평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2024년 4월 9일부터 4월 26일까지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개의 단체가 지원하였으며, 행정심의를 통과한 2개 단체 중 PT심의를 통해 최종 1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지원사업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심의개요

- 심 의 명 : 「2024 한국미술 비평지원」 참여단체 2차 공모 PT심의
- 심의일정 : 2024. 5. 20.(화)
- 심의위원 : 내·외부 전문가 5인 (*가나다순)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책
1	박영택	경기대학교 미술경영학과 교수
2	양지연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교수
3	정 현	인하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4	최태만	국민대학교 회화전공 교수
5	조소현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장

○ 심의기준

심의지표	가중치	세부심의 내용
목적의 부합성 및 적절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사업취지)의 이해도 ○ 계획, 구성, 성과 등 공모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지원단체의 전문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을 위한 매체 전문성과 적절성 ○ 사업 수행을 위한 내·외부 인력 배치와 활용의 적절성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합리성 ○ 비평문 기획의 참신성 ○ 기획과 비평가 매칭의 적절성 ○ 추진 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혜자에 대한 지원 효과 ○ 사업 효과의 공공성 확보 ○ 해당 사업성과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선정결과 : 총 1개 단체 선정

연번	지원단체명	매체명
1	비평웹진 풍	비평웹진 풍

○PT심의 총평

한국미술 비평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취지에 부합한 기획 의도가 명확하고 시의성과 참신성을 바탕으로 비평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계획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의하였음.
 선정 사업이 미술비평 생태계를 확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좀 더 고심한다면 지원사업의 효과를 달성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교부조건 : 지원사업 교부신청 전 센터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 구체화 및 예산 조정 필수 (필요 시 문체부, 예경, 심의위원간 검토 추진)

※ 센터와의 지원 사업의 구체화 및 예산 조정을 협의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단체 의무사항

- 지원사업을 통해 게재된 지면 또는 웹페이지에 지원 문구 기재
 - ※ 예시) “이 기사(원고)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특별 기고로 게재되었습니다.”
- e나라도움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기획자 포함)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 불이행시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의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 고용·도급·업무위탁·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
 -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사업운영인력 전원 해당)
- 사업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기간 종료일은 아트페어 현장운영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로 제한됨

- 선정단체 대상 사전워크숍 참석 필수
- e나라도움 상 집행·정산·실적보고·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유의사항

-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
 - * 선정 제외 대상에는 지원단체 뿐 아니라 참여 비평가 및 작가도 포함함
- 선정 단체 대표 및 임직원과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평가 및 작가가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 경우 지원 불가
- 대표 본인 및 임직원에게 비평사례비 지급 불가
- 지원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 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사업 추진 도중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야 함
-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비평문의 저작권 관련 논란(표절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에 지출된 원고료 및 게재료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지침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 * 예 :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 타(대표 명의 포함)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
 - * 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
 - * 국고보조금(지원금) 집행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내에서만 가능
 - * 교부 신청은 행사 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가능
- 임직원 연관(직계존비속 포함)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관련)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제한)

-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공모요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사업운영 가이드, 의무 및 유의사항 등 규정을 미숙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제출 후 수정 불가)

향후 일정(안)

- 선정단체 대상 사전워크숍 2024년 6월 중

관련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 02-708-2219 / hyme9@gokams.or.kr